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0433     |
| 의 퇴 인 | 김영호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4.06.14. |
| 추계번호  | 23C0446     |

#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<br>(도시형캠퍼스의<br>설립) | (제1항)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.<br>(제2항)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br>(제3항)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(교실, 도서관 등 교수·학습활동에 직·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)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2  | 안 제7조<br>(유형 및 종류)       | (제1항)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개편형 도시형캠퍼스: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<br>2. 신설형 도시형캠퍼스: 특정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,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,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<br>3. 공공시설 활용형 도시형캠퍼스: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 하거나 증축하여 구축하는 도시형캠퍼스<br>(제2항)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8조<br>(교육과정)          | (제1항)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.<br>(제2항)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의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10조<br>(교직원)          | (제1항)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,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.<br>(제2항)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,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br>(제3항)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5  | 안 제12조<br>(학교급식)         | (제1항)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에서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·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·운영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야 한다. 다만,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(제2항)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에서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6 | 안 제13조<br>(학교운영의 통합·분리) | (제1항)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,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<br>(제2항)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·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.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<br>(도시형캠퍼스의 설립),<br>안 제7조(유형 및 종류),<br>안 제8조(교육과정),<br>안 제10조(교직원),<br>안 제12조(학교급식),<br>안 제13조<br>(학교운영의 통합·분리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형캠퍼스 시설·설비의 운영 및 교직원 배치, 교육과정 운영, 학교급식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 - 제정안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“도시형캠퍼스”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
    - － “도시형캠퍼스”를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

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분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 또는 분교장으로 정의(안 제2조제2호)

- 도시형캠퍼스에 대해서는 ‘설립기준’과 ‘교사 및 체육장 시설기준’을 따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직원을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두도록 하며,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

□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신설될 도시형캠퍼스의 수를 추정하고, 이에 소요될 교직원수, 학교급식 등 시설·설비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신설될 도시형캠퍼스의 규모 및 유형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3년 10월 ‘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’을 발표
  -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‘도시형캠퍼스’를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정의<sup>1)</sup>
  - ‘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’에 따르면 도시형 캠퍼스는 개편형(제2캠퍼스 학교, 주교복합 학교) 및 신설형(제2캠퍼스 학교, 주교복합 학교, 매입형 학교, 공공 시설 복합 학교)로 나뉘며,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재정소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 - 다만,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구체화된 계획은 ‘고덕강일3지구’ 한곳에 불과<sup>2)</sup>
- 경기도 교육청 또한 '23년 10월 ‘경기도형 제2캠퍼스’설치 방안을 마련
  - 경기도형 제2캠퍼스는 교육환경평가, 자체·중앙재정투자심사, 도립학교 설치 조례·규칙 반영 등 일반 신설학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며, 증축 소요 물량만큼 설치하도록 함
  - 필요한 학교부지는 국유재산, 지방자치단체 공규재산 무상제공 등을 통해 확보하거나 개인, 법인 등 개발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공급(기부채납)으로 마련하고 부지특

1)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(2023.10. 서울특별시 교육청)

2)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따르면 ‘강동구 상일동’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4학급 이하 규모의 “(가칭)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” 설립사업을 진행중임

성에 따라 다양한 교사동 형태, 건축 유형 등 탄력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

- 다만,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형캠퍼스 사업 진행 계획을 예상하기 어려우며, 도시형캠퍼스의 교사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직원 배치 및 겸임에 대한 사항과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설립될 도시형캠퍼스의 수 및 캠퍼스별로 소요될 구체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
- 이에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Ⅳ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정혜승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정혜승 | 02-6788-4627 | hs0387@assembly.go.kr |